

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



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바로가기

신청자격 및 접수일정

지원대상

-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진단(3개월 이내)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부부(건강보험료 기준)
※ 지역 및 나이와 관계없으며 부부당 1회만 지급

접수일정

- 상시접수(예산 소진 시까지)
-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
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
(단위: 원)

가구원수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(직장+지역)
2인	222,624	187,378	226,361
3인	284,769	264,991	291,898
4인	346,067	335,569	359,887
5인	434,962	436,179	476,875
6인	476,875	481,248	521,613

- ※ 부부 각각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½로 경감한 뒤 합산
- ※ 2024년 신청자는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

제출서류

구비서류(난임진단 검사를 받은 관련 서류는 3개월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)

구분	필수제출서류	주의사항
지원 대상 확인	1. 난임진단 검사비지원 신청서	·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ppfk.or.kr)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	2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	
	3. 난임 진단서	· 난임진단 검사 결과 기재
소득 기준 확인	4.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최근 1개월)	· 맞벌이 부부 모두 제출 ·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추가 제출 ·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
	6. 주민등록등본 1부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	· 생년월일만 표시 ·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, 등본 각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검사비 지급	7.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	· 난임검사 관련 지출 내역 제출 · 난임검사 명칭 및 비용 기재
	8. 입금 통장사본 1부	· 신청자 명의 통장(사용 가능한 입금 통장)

지원범위 및 검진기관

지원내용

-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 (일부 및 전액)
-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(부부당 1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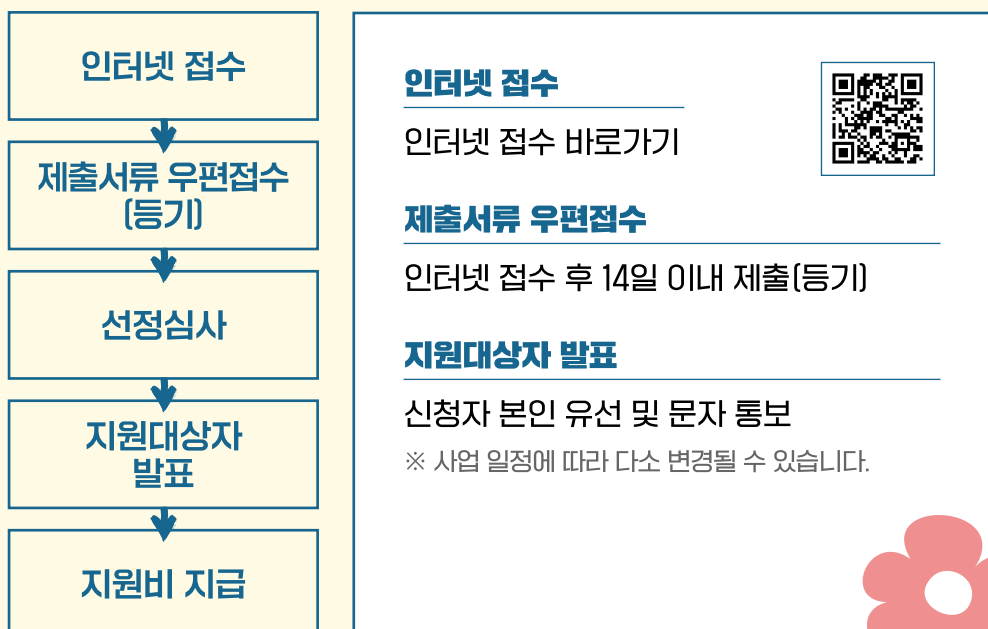
검진기관

난임진단 지정의료기관(전국)

※ 건강보험심사평가원 (www.hira.or.kr)내 『특수운영기관 정보』에서 "난임시술"로 검색, 확인 가능

접수방법

인터넷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발송



서류 제출처 및 문의사항

★ (07230)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건강과 난임진단검사지원사업 담당자 앞

★ 문의전화 02-2639-2855

주의사항

- ★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.
- ★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★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.
- ★ 유사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됩니다.